

대출거래약정서(기업용)

(영업정보관용)

결재	본인자필확인	팀원	책임자	팀장	부장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앞

20년월일

본인	성명 :	①
	주소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농협손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1. 대출과목 : 대출 (대출종류 : 증서대출)
2. 거래구분 : □ 개별거래 □ 한도거래
3. 대출금액 :

금 원

4. 대출개시일 : 20년월일
5. 대출기간 만료일 : 20년월월일
6. 이자율 등 : ■ 고정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제2항제1호선택)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MOR () () 기준금리 + ()%
□ 국고채 () () 기준금리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기타 () () + ()%
■ 변동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제2항제2호선택)

- 보험사 기준금리 + ()%
□ MOR () () 기준금리 + ()%
□ 국고채 () () 기준금리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기타 () () + ()%

7. 지연배상금률(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17%

8.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9. 수수료납부 :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아래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 이자입금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 수수료 ()원

10. 대출실행방법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농협손해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11.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 최초의 대출 실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부터 매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기타 ()

12.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환일부 소급하여 매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 X (잔여기간/대출기간)

14. 기타특약 :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대출금 수령 및 자동이체 계좌

금융 기관		수령 계좌번호		예금주	
	자동 이체	계좌번호			
		이체일	일		

제 3 조 이자율의 변동

- ① 제1조의 거래조건중 이자율은 대출약정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대출에 적용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은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MOR(Market Opportunity Rate:시장조달금리)기준금리(□ 3개월물, □ 6개월물, □ 1년물, □ 2년물, □ 3년물, □ 5년물)」는 (□ 매3개월, □ 매6개월, □ 매1년, □ 매2년, □ 매3년, □ 매5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재산정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합니다.
1. 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00유통수익률」 증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재산정 주기가 「6개월」·「1년」·「2년」·「3년」·「5년」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재산정 주기 해당일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애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 증가(4사 평균)의 단순평균 값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이 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00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손해는 고객센터 게시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는 (□ 매6개월, □ 매1년, □ 매()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고시일까지는 직전월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고시일 익영업일부터는 해당월의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④ 「국고채 기준금리 (□ 1년물, □ 3년물, □ 5년물, □ 10년물, □ 20년물, □ 30년물)」는 (□ 매 1년, □ 매 3년, □ 매 5년, □ 매()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15시30분)하는 최종 호가수익률을 적용하되, 금리재산정의 직전영업일 국고채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⑤ 변동사 기준금리는 매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 재산정은 보험 종류별 전전월 예정(공시)이율을 가장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대출의 경우 농협손해가 정하는 일자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⑥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여신기간 만료시 기한연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없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기준금리, 채무자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변경된 이자율은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이자율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⑧ 제6항 본문에 의거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해지일 경과시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 ⑨ 제7항에 정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기타특약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출기간 만료일 전(기한연기로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인

①

본인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①

대출거래약정서(기업용)

제 5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상환하는 여신의 경우, 차용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농협손해는 확정된 차용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상환하는 여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상환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2단계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농협손해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회사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농협손해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적지표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와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가결"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된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 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쟁점이 발생한 때
 - 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협손해는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농협손해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농협손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8 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간만료일(기한연기로 대출기간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이하같음)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및 잔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합니다.
 2. 잔여기간은 대출기간에서 대출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정상적인 할부상환원금을 납입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당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3. 대출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4. 대출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5. 채무자 사망의 사유로 대출금을 당사가 회수하는 경우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제 9 조 담보·보험

본인은 농협손해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을 농협손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농협손해가 요청하는 경우 농협손해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농협손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10 조 상환지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지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본비율	%	%	%	%	%
()	%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협손해와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의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농협손해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농협손해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1 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농협손해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농협손해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지속특정,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농협손해의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농협손해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2 조 여신기간 자동연장 특약

제1조의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농협손해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여신기간을 ()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여신금리+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채무자 여신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보상을 받는 여신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제 14 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와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와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기업용)

(고객용)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주소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농협손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1. 대출과목 : 대출 (대출종류 : 증서대출)
2. 거래구분 : □ 개별거래 □ 한도거래
3. 대출금액 :

4.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5. 대출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6. 이자율 등 : ■ 고정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제2항제1호선택)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MOR () (월) 기준금리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기타 () + ()%

■ 변동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제2항제2호선택)

- 보험사 기준금리 + ()%
□ MOR () (월) 기준금리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기타 () + ()%

7. 지연배상금률(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17%
8.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9. 수수료납부 :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아래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 이자
입금일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 () 수수료 () 원

10. 대출실행방법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농협손해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11.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
부터매 ()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 최종의 대출 실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기타 ()

12.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 (개월) 마다 정한 납입일() (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환일부 소급하여 매 () (개월) 마다 정한 납입일() (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 (%) X (잔여기간/대출기간)

14. 기타특약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대출금 수령 및 자동이체 계좌

금융기관	수령 계좌번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일

제 3 조 이자율의 변동

- ① 제1조의 거래조건중 이자율은 대출약정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대출에 적용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은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MOR(Market Opportunity Rate: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는 (□ 매3개월, □ 매6개월, □ 매1년, □ 매2년, □ 매3년, □ 매5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재산정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합니다.
1. 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의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00유통수익률」 증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재산정 주기가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재산정 주기 해당일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의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애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 증가(4사 평균)의 단순평균 값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이 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00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손해는 고객센터 게시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는 (□ 매6개월, □ 매1년, □ 매() (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전국농협손해연합회가 고시한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고시일까지는 직전월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고시일 익영업일부터는 해당월의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④ 「국고채 기준금리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30년)」는 (□ 매 1년, □ 매 3년, □ 매 5년, □ 매() (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15시30분)하는 최종 호가수익률을 적용하고, 금리재산정의 직전영업일 국고채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⑤ 보험사 기준금리는 매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 재산정은 보험 종류별 전전월 예정(공시)이율을 가장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대출의 경우 농협손해가 정하는 일자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⑥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여신기간 만료시 기한연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없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기준금리, 채무자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변경된 이자율은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율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⑧ 제6항 본문에 의거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해지일 경과시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 ⑨ 제7항에 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기타특약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출기간 만료일 전(기한연기로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인

㉠

본인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제 5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차용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농협손해는 확정된 차용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2단계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농협손해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적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와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된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 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쟁점이 발생한 때
 - 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협손해는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농협손해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농협손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8 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간만료일(기한연기로 대출기간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이하같은)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및 잔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합니다.
 2. 잔여기간은 대출기간에서 대출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정상적인 할부상환원금을 납입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당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3. 대출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4. 대출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5. 채무자 사망의 사유로 대출금을 당사가 회수하는 경우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제 9 조 담보·보험

본인은 농협손해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을 농협손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농협손해가 요청하는 경우 농협손해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농협손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10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골짜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본비율	%	%	%	%	%
()	%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협손해와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농협손해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농협손해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1 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농협손해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농협손해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에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에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제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농협손해의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농협손해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2 조 여신기간 자동연장 특약

제1조의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농협손해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여신기간을 () 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여금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여신금리+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채무자 여신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보상을 받는 여신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제 14 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의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